

■ 主題發表 2

公共圖書館司書職의 人事制度問題

—公務員任用令의 司書職制를 中心으로—

國立中央圖書館司書官
玄 圭 燮

1. 虛像과 現實

公共圖書館과 國立大學圖書館에 從事하여 왔던 圖書館人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은 虛像과 냉혹한 現實을 알려야 한다.

첫째로 1970年 12月 31日字로 改定된 公務員 任用令(대통령령 第5449號) 중 司書職에 대한 改定部分은 司書職에 대한 明白한 法上的 退行措置이며 이를 十餘年 이 지난 오늘 擧論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放置하여 온 圖書館界의 責任은 韓國의 圖書館史上 하나의 커다란 汚點으로 남는다는 事實이다.

우선 退行措置라는 表現이 明白한 理由를 밝혀보자.

이 땅에 司書職을 公務員任用令에 示顯시켰던 첫 관 계법인 1949年度 公務員任用令(대통령령 第208號)에 보면 司書職은 堂堂하게 單一職群으로 規定되고, 最上級을 3級乙類, 最下級을 4級甲類로 制限하였다.

이 때가 圖書館人의 法的地位가 가장 合理的이었던 唯一한 時期였다.

1961년에 任用令의 改定이 있었는데 이 때에도 學藝職群으로 직군을 옮겼을 뿐 職級에는 變化가 없었다.

1963년에는 또 다시 行政職群으로 移行되었으나 그 때에도 職級의 變動은 下位職이 더 細分되었을 뿐 上 限線의 變動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1970年의 改定 任用令에는 司書職의 上限線을 3級乙類로 制限하였다. 表(1)은 이와 같은 경위를 밝히고자 작성한 일람표이다. 表에 제시된 變化過程으로 보아서도 종전의 法的地位에서 明白하게 退行되어 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法의 解釋上 司書職은 결코 退行된 것이 아니라 行政職의 上位級으로 연결되도록 併合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法理論家 또는 一部 圖書館人의 見解가 이 任用令의 司書職級이 退行措置임을

認定하여 또다시 復元하려던 圖書館人들의 노력을 저지시켰다.

그러나 이 見解는 너무도 確然한, 그리고 事實이 立證하는 分明한 虛像이었다. 本人이 알리고자 하는 두 번째 事實은 司書職과 行政職이 3級甲類 이상의 職급에서 併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重大한 착각이란 점이다.

설혹 司書가 승승장구로 승진하여 3級甲類에서 2級, 1級까지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法的으로는 司書職으로서의 3級甲類는 消滅된 것이며, 다만 行政職으로 마련된 書記官, 理事官이 있을 뿐 이다. 더 양보하여 司書가 行政職의 職列名을 合法的으로 使用하여 승진되어야 함이 合法的이라 하더라도 實質적으로는 退行이다.

왜냐하면 日本의 國立國會圖書館의 司書職은 一級까지 승진되지만 그 職列名은 司書監이며 이와 비교해 볼 때 上級職名에서는 行政職의 職급명을 使用하는 우리의 임용령은 退行된 것이기 때문이다.

圖表(1) 公무원법상 사서직의 변동사항

年	法 令	司書職給內容	備 考
1949. 11. 5	公務員任用令 (大統領令 第208號)	3級甲~4級乙 까지	單一職群
1961. 4. 15	公務員任用令 (國務院令 第204號)	學藝群 소속 3級甲~4級乙	
1963. 5. 29	公務員任用令 (閣令 第1317號)	行政職群으로 소속 3級甲~ 5級乙	당시 편수직렬과 특역직렬로 行政職群으로 편입
1970. 12. 31	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 5449호)	行政職群所屬 3級(乙)~5級 (乙)까지로 格下	1) 당시 감사직도 3 (乙)까지 上限線이 정해졌으나 익년 19 71년에 3(甲)으로 개정. 2) 편수직렬도 전부 한사직군으로 통합. 현재에는 사서직단 행정직군 소속.

위에 든 例로서 우리는 司書職과 行政職이 實質의로 併合되어 있다는 看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司書가 行政職列을 좇아 昇進될 수 있다는 前提條件에서 세워진 이들 看法이 事實은 그 前提條件 자체가 착각이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現象을 무엇이라고 불려야 할 것인가? 이것이 허망한 착각만으로 구성된 虛像이란 것이다.

本人이 세번재로 證言하려는 것은 司書職이 行政職列을 따라서 昇진하리라는 前提條件 밑에서 1970年度 改定 任用令을 기대하였던 것은 虛像이었으며, 그것이 虛像인 證據가 있다는 점이다.

表(2)는 國立中央圖書館에서 1971년부터 1980年 10月 現在까지 만 10년에 걸쳐 3級甲類의 昇진 및 이동 狀況을 기록한 것이다. 10年間 무려 12件的 昇진 또는 水平移動의 件數가 있었으나 司書官(3級 乙類)이 昇진한 件은 단 한 件도 없다.

公共圖書館인 경우에도 本人이 아는 한 단 한 명의 司書官도 昇진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現實이다. 우리는 이 現實을 정면으로 맞서서 直視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圖書館人은 司書職이던 行政職이던 關係없이 (이 現實이 누구의 잘못이거나 누구의 利害關係로 招來된 것이 아닌단지 司書職이던 行政職이던 이 問題와는 關係가 없는 것이다) 制度에 의한 것인 만큼 이 制度가 과연 옳은 것이냐 또는 그릇된 것이냐를 判斷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目的은 바로 위에서의 現實을 모든 關係를 초월하여 客觀的이며 냉정하게 分析해 보려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司書職 現實이 있게 된 制度 즉, 公務員任用令에 司書職規定이 어떤 結果를 招來하였으며 어떤 代案이 必要한가 하는 點을 밝히려는 것이다.

再三 밝혀 두고 싶은 것은 이 글의 내용은 어느 特定人이나 機關과는 전혀 關係 없는 것이며 설혹 關係된 問題에 연결되더라도 결코 비판하려는 뜻이 아니고 事實을 밝혀 보다 改善된 方向으로 問題를 풀어나가려는데 있다는 점이다. 이점 특히 오해가 없기 바란다.

圖 表(2) 국립중앙도서관 서기관 발령 집계표

(1971~1980)

각과명	의부에서 국립중앙 도서관으로 이동한 수	국립중앙 도서관에서 의부로부터 승진한 수	사 이 기 관 으로 진 한 수	司書官이 기 관 으로 진 한 수	서 승 총 수
정 리 과	2	1	0	0	2
수 서 과	1	3	0	0	4
지도협력과	3	1	0	0	4
조사연구과	1	1	0	0	2
열 략 과	0	0	0	0	0
합 계	6	6	0	0	12

2. 結論的 分析

지난 10年間 司書職이 公務員法上 그 地位를 3級甲에서 3級乙로 格下된 結果로서 現實的으로 남겨진 問題가 무엇일까?

첫째 問題는 司書職에서 圖書館의 書記官으로 昇진한 圖書館人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다. 司書官으로서 10年 이상 奉職하였던 圖書館人들이 수없이 많은 挫折과 絶망 속에서 이른바 專門人으로서 마땅히 生涯를 바쳐야 할 職場임에도 불구하고 昇진할 수 없는 罪인 과 같은 생활을 해야 했다.

따라서 이들 司書의 意慾이 低下된다는 것은 너무도 自然的인 現狀이다. 或者은 이러한 意慾喪失症은 現在 司書官에만 해당된다고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重大한 착오이다.

司書들의 準據集團은 圖書館 내에서는 역시 그들의 最上級 先輩인 司書官인 것이다. 準據集團인 司書官을 보는 後輩들의 意慾은 그야말로 司書官을 따라서 準據 하던가 더욱 無力해 질 수 밖에는 없다.

두번째 問題는 바로 이와같은 意慾喪失症이 司書職全體에 팽배되어 있다는 점이다. 깊게 깔려 있는 패배 의식은 司書들의 質的인 저하를 自然發生的으로 招來 하게 된다.

물론 처음에는 이 意慾喪失症은 한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해가 거듭되면서 이른바 經濟學에서 말하는 貧困의 惡循環現狀이 나타난다. 波及은 더욱 큰 힘으로 加速化되어 드디어 전체에 이른다.

세번째 問題는 司書의 資質의 貧困이 해가 거듭됨에 따라 惡循環되는 것이다. 意慾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더욱 士氣가 저하되고, 士氣가 저하되기 때문에 더욱 資質이 貧困하게 된다. 이러한 惡循環現狀이 주는 또 다른 問題는 有能한 司書를 確保하거나 새로 採用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훌륭한 人的資源을 確保할 수도 啓發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네번째 問題는 圖書館의 誘因體制를 세워나갈 수가 없다는 점이 된다. 公共圖書館에 大學의 圖書館學科를 수료한 職員이 현저하게 적은 理由가 여기에 있다. 도대체 上向의 可能性이 없는 職場에서 意志만으로 獻身의 價値를 實現시킬 수는 없다. 더구나 다른 圖書館種에 比하여 經濟的으로도 나은 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司書職은 希望을 잃었던 것이다.

다섯째로 또 하나의 重要한 問題가 있다. 그것은 士氣가 떨어진 部下를 거느린 指揮者의 立場이다. 司書들에게 命令함으로서 圖書館行政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물론 주어진 命令은(行政組織이 위약이 上命下達의

原則下에 이루어지므로 誠實히 이행될 것이다. 그러나 圖書館行政은 自發的이며 創造的 獻身的인 意志와 圖書館에 대한 깊은 愛情이 없는 한 반드시 內部的인 붕괴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士氣가 떨어진 司書에게 創造力이나 愛着心을 要求할 수 없고, 결국은 命命만으로 圖書館行政을 이끌어 나갈 수 밖에 없다. 이 때 內部로부터의 보이지 않는 붕괴는 시작되는 것이며, 이 붕괴는 命命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이다.

最終的으로 本人은 司書의 法的地位를 格下한 措置가 圖書館人의 化石化現狀을 가져 온다는 點을 들고자 한다.

어떠한 變化에도 非彈力的이며 어떠한 충격에도 미온적인 태도가 長期間에 걸쳐 지속되는 현상을 化石化現狀이라고 할 수 있다.

司書들의 關心이 圖書館에 있을 수 없을 때 병대 받는 職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같은 當연하다 하겠다. 이 경우에 이들 司書는 化石人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위에 든 여러 問題點은 公務員任用令에 司書職級이 下向調整됨으로써 招來되는 重大한 現狀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重大한 現狀이 되는 理由는 너무도 명백하다. 圖書館도 결국 사람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이다. 源泉的으로 人間의 成長을 질식시키는 바로 그 人間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圖書館의 成長을 정지시키는 결과가 오기 때문이다.

이 어찌 重大한 問題가 아니겠는가?

3. 改正의 事由

前項에서 든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公務員任用令의 司書職級에 대한 事項은 너무도 當然히 改正되어야 한다. 圖書館 成長의 源泉的인 要素인 人的資源을 고갈시키는 이 規定은 10年間 철저히 圖書館人을 질식시켜 왔다. 이제 그 結果도 分明하게 밝혀졌으니만큼 빠른 時日 內에 改定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시금 公務員任用令 中 司書職級에 대한 現行措置가 시정되어야 할 理由를 여기에 切명함으로서 改定の 當爲性을 밝혀 두고자 한다.

첫째로, 公共圖書館이 한 나라의 國民教育의 터전이며 生涯教育(또는 平生教育)의 現場일진대 이러한 重要한 社會教育機關을 營爲하는 人的要因을 저해하는 制度는 고쳐져야 한다. 平生教育의 重要性이 그 어느 時期보다 高潮되고 있는 이 때 平生教育의 重要한 社會的인 公式機構인 圖書館을 저해하는 要因은 하루 속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데에 아무도 反對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과거 10年間 現任用制度는 司書를 限界狀況

에 몰아 넣고 그들로 하여금 질식하도록 가두어 두는 結果를 招來하여 왔다. 이것은 非人道的이다.

셋째로, 國立機關으로서의 圖書館에 有能한 司書를 確保하기 위하여 現制度는 改正되어야 한다. 특히 有能한 職員이 스스로 自進하여 希望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이 다른 職場으로 移職하려는 시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現任用制度는 改正되어야 한다.

넷째로, 現行 公務員任用令에 3級乙類로 한정된 職列로서는 오직 司書職 뿐이며, 이러한 不條理를 제거하기 위하여서도 司書職列에 대한 條項은 개정되어야 한다. 現行 公務員任用令에 나타나 있는 50여 職列 中에서 3級乙類까지 上限線이 設定된 것은 오직 司書職과 通信職列 뿐이다. 圖表(3) 職列別 最高職級 一覽表를 보면 3級乙類의 司書職만이 너무도 초라하게 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나마 通信技術職은 通信士 職列이 있어 3級乙類 이상으로는 통신기정, 통신부기감, 통신기감으로 승진될 수 있다. 司書職은 行政職群에 소속되어 있으나 이미 지극한 바와 같이 司書職이 승진할 수는 없는 現實的인 制限을 받고 있다.

따라서 司書職列은 최소한 그들 스스로 業務를 決定할 수 있는 位置까지는 上位職級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現任用制度는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司書職의 專門性을 國家에서 保護하고 育成하여 줌으로써 文獻의 保存과 知識의 生産을 위한

圖表 (3) 職列別 最高職級 一覽表

最高職級	職 列 名	職列數
1 級	外務, 行政, 工業研究	3
2 級甲類	矯正, 檢察, 出入國管理, 機械, 採鑛, 鑛業研究, 農林, 畜產, 農業研究, 林業研究, 蠶業研究, 畜產研究, 家畜衛生研究, 農工研究, 物理, 醫務, 藥務, 保健, 保健研究, 船舶, 水產, 水產研究, 土木, 通信士, 航空, 水路	27
3 級乙類	學藝研究, 編史研究	2
3 級甲類	輔導, 監査, 電氣, 纖維, 化工, 造船, 人蔘, 農村指導, 生活指導, 獸醫, 氣象, 看護, 建築, 地籍, 測地	15
3 級乙類	司書, 通信技術	2
4 級甲類	電送技術	1
計		50

資料: 現行 公務員任用令(1969. 4. 11대통령 令 제3877호 개정. 1976. 11. 5 代통령령 제8269호)[別表 1] 1급 내지 5급 직급표를 參考로 하여 作成한 것임.

文獻의 活性化를 위하여 더욱 나가서는 國家의 發展이 知識을 바탕으로 이룩되고 있는 知識產業社會의 구현을 위하여 공무원으로서의 司書職制度는 改善되지 않으면 안 된다.

世界的인 추세에 따라 한국에서도 司書職을 專門職으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職위의 실질적인 위치가 上向不可職으로 취급되고 있음은 二律背反의 處事이다. 한국의 圖書館法(法律 제1424호)에는 司書라는 전문직의 資格을 규정하고(第6條) 同法施行令(대통령령 제4191호) 4條에서 正司書와 準司書의 資格구분을 설정하여 文敎部長官名義의 資格증이 發給되어 國家로서 司書職을 보호 育成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任用時에는 下級者로만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二律背反인 것이다. 下級者에게 資格證이 必要한 경우는 우리나라의 司書職 뿐일 것이다.

主要國의 司書 專門職 資格制度는 한 나라의 文獻을 守護하고 크게는 文化를 정문화하는 人的 資源으로서 司書를 保護하여 주고 있다. 圖表(5)의 主要國의 司書職 制를 보면 各國이 司書를 公인자격제도로서 育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실제로 고용함에 있어서도 이에 상응하는 임용제도를 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사서는 GS 5(우리 나라의 5급공무원)에서부터 GS 18(우리 나라의 1級公務員)에 이르기까지 사서직열로 승진될 수 있다. 日本만 하더라도 國立國會圖書館은 一級相當의 司書監에서부터 5級相當의 司書까지 單一職列로서 승진되도록 制度化하고 있다.

圖表(6)은 우리나라의 공무원 職급에 準하여 주요 各國의 공무원으로서의 司書職을 對比시킨 것이다.

위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서도 司書職은 優待되어야 하며 保護되어야 한다.

現行 우리나라 公務員任用制度 중에서 司書職에 대한

圖表 (5) 主要國의 司書職 制度

국 별	자 격 증 류	구 비 조 건
英 國 (공인사서 제도)	① L.L.A.(Licentiate of Lib. Assoc.) ② A.L.A.(Associate of Lib. Assoc.) ③ F.L.A. (Follow of Lib. Assoc.)	1) 학위취득 1년 후 2) L.L.A. 취득 3년 후 A.L.A. 자격 취득 가능 1) 大學(도서관학과)卒業者 2) 3년 이상 實務經歷(1년 司書敎育)(일반大學卒業者라야 한다. 또한 L.L.A. 취득자) 1) A.L.A.자격취득후 5年間 2) 論文 1 편이상
프 랑 스 (공인사서 제도)	① Conservateur ② Soces-bibliothecaires	1) 국립도서관학교 출신 2) 고문서 취급 면허원자 1) 一般大學 卒業者로서 자격시험에 合格한 者 2) 3年 이상의 도서관경력 소지자
美 國 (공인사서 제도는 없고 학위로 결정)	① Assistant Librarian ② Associate Librarian ③ Librarian	1) 학사학위 소지자 1)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10년 이상 근무 1)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日 本	司書 및 司書補	

規定은 國家가 定한 法律의 기본정신에도 역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조속히 改正하여야 한다.

4. 政策提議

提議 1: 司書職을 하나의 專門職으로 認定하고 비록 現狀의 狀態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가의 文化를 保護하여 未來의 世代에 계승시켜 줄 막중한 使命을 지닌 圖書館人에게 그들이 自律의 으로 責任을 지고 일할 수 있도록 專門性을 認定하여 줄 것을 提議한다.

司書職은 世界 어느 國家에서건 專門職으로 保護하고 있으며 國際間 學術機關과 協議機關이 형성되어 있

圖表 (6) 主要國의 사서직 공무원 職급 대비표

한국의 職급기준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국 別	직 군		갑	을	갑	을	갑	을
한 國	행정				사 서	사 서	사 서 보	사 서 서기
일 本	학예				3등 1급	4등 2급	5등 3급	6등 4급
미 國	사서(Librarian)	GS 18-17	GS 16-15	GS 14-13	GS 12-11	GS 10-9	GS 8-7	GS 6-5
영 國	집행크라스	Grade 1 (7호봉)	Grade 2		Grade 3		Grade 4(16호봉)	
독 일	단 일	B3-B1	A16-14		A13-10		A12-9	A8-A5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단 일	(부관장) 사서감	(국 장) 사서감	사서감	참사 (3-4등)		사서 (7-8등)	사서 (8등)

1) 日本: 現行法規總覽 '國家公務員法'에서 참조.
2) 美國: U.S. Civilservice Commissions. Occupation of Federal White Collar Workers U.S. Govt. Publ. Off., 1964
3) 영국: 박동서 「比較 公務員制度論」과 William Myson. Librarianship as a Carea London, Batsford 1963. 참조.
4) 國立國會圖書館年報 1968.

圖表 (7) 도서관 국제기구 일람표

기 구 명	원 명	목적연대
① 국제도서관협회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Libraries	1964. 4. 30. 창설
② 국제농업도서관협회	International Assoc. of Agricultural Librasrians.	1965. "
③ 국제법률도서관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1959. "
④ 국제음악도서관협회	International Libraries of Music	
⑤ 국제문서연맹	International Council of Archives	1948. "
⑥ 국제도큐멘테이션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Documentation	1956. "
⑦ 국제정보처리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Information Process.	1960. "
⑧ 국제도서관협회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1929. "
⑨ 국제음향문서연맹	International Associate of Sound Archives.	1968. "

圖表 (8) 국제간 협약으로 전개되는 프로젝트

프로젝트	추진기구	참가국	내용
世界書誌統整 (U. B. C=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국제도서관협회연맹 (IFLA)	미국, 영국, 불란서, 독일 소련등 110여국	세계 서지 매체(목록)를 국제적으로 統一化한다.
世界科學情報流通體制 (UNISIST=World Scientific Information System)	유네스코	미국, 영국, 독일, 불란서, 소련, 일본등 40개국	세계의 과학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Date base 의 형성
世界 定期刊行情報制度 (ISDS=International Serial Data System)	불란서 국립도서관, 주관 유네스코후원	미, 영, 독, 불, 일본등 28개국	세계의 정기간행물 정보의 Data base 를 형성 공동 이용한다.

다.

圖表(7)에 이들 국제기구를 열거하여 보았다. 전세계적으로 支部가 형성된 주요기관만 가려 보더라도 이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9個 團體나 된다. 이와 같이 세계적인 機構가 많은 것은 그만큼 도서관의 업무가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司書職이 專門의 研究가 必要한 職種임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가 文獻의 국제적 이용을 위하여 많은 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고 있는바, 세계 각국의 圖書館이 이 프로젝트에 가담하여 범세계적 文獻活用 體制에 참가하고 있다.

도표(8)은 現在 가장 大規模로 전개된 국제적인 수준의 프로젝트란 열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 규모의 諸計劃에 참여하려면 그 국가의 圖書館人이 專門의 知識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도서관인을 行政府에서 専門적으로 認定하지 않는 까닭에 국제 대열에서 落伍되어 가고 있으며 圖書館 文化上으로는 後進國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획은 특히 國立中央圖書館이 그 나라를 代表하여 추진하고 그 성과로서 국제사회에 參與하게 된다. 한국은 사서직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 그들에 대한 認識이 없으므로 司書의 士氣가 저하되고 意欲이 상실되어 실제로 국제문제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또한 관심을 둘 必要도 없는 下級者이므로 對國際의 問題에 대한 심각성은 날로 高調되어가고 있는 實情이다. 司書職을 專門職으로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主張은 결코 도서관인을 위한 近視眼의 안목에서 提議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文化를 保存하고 繼承한다는 大局의 見지에서 提議하는 것이다.

提議 2: 司書職 任用制度는 거의 民事상태에 있는 도서관계를 支援하기 위하여 必須的으로 改正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만큼 공무원 임용제도상의 司書職의 職級은 重大性을 갖는다. 이 중대성은 국가기관의 도서관에만 해당되는 問題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尙 強調하여 둔다.

적게는 국가기관 도서관 전체에 크게는 私立의 大學 및 專門圖書館에 더욱 나아가서는 大學의 圖書館學科나 圖書館職을 지망하려는 젊은 世代에게 司書職級이 3級乙類까지로 봉쇄되어 있다는 事實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일 司書職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다소라도 있었더라면 現在와 같은 不毛地帶로 圖書館이 남아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司書職을 三級甲類에서 三級乙類로 格下시킨 것은 결코 保護는 아니었다. 司書職級을 이제부터라도 格下시키지 말고 保護하여 줄 것을 固執히 提議한다.

提議 3: 구체적으로 司書職級을 上向調整함으로써 陞進과 失意에 빠져든 司書와 圖書館을 구출하기 위하여 表(9)와 같은 세가지 代案을 提示한다.

물론 이 代案은 私案에 불과하다. 그러나 現與件으로서 가능한 合理性 있는 代案 중 重要한 것은 모두 제안되어 있는 셈이라 하겠다. 이 代案을 검토하여 司書職의 活路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再三 提議한다.

5. 圖書館界에 대한 提言

提言 1: 司書職의 任用制度에 관한 本文의 여러 問題는 이미 強調한 바와 같이 결코 국가기관만의 問題

圖表 (9) 代案의 提示

가. 第一案 : 현행 행정직군에서 사서직군으로 獨立하고 上位職級을 부여한다.

계급 직렬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갑	을	갑	을	갑	을	갑	을	갑	을
사 서	사 서	사서감	사 서 이사감	사 서 부이사관	사 서 서기관	사 서 사무관	사 서 주 사	사 서 주사보	사 서 서 기	사 서 서기보	
	의 무	의무관	의 무 이사관	의 무 부이사관	의 무 서기관	의 무 사무관	의 무 주 사	의 무 주사보			

나. 第二案 : 司書職을 학사직군으로 편입시키고 文獻研究官 職렬을 신설하여 상위직을 부여한다.

계급 직렬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갑	을	갑	을	갑	을	갑	을	갑	을
학 사	학예연구		학 예 연구관	학 예 연구관	학 예 연구관	학 예 연구사	학 예 연구사보	학 예 연구원	학 예 연구원보		
	편사연구		편 사 연구관	편 사 연구관	편 사 연구관	편 사 연구사	편 사 연구사				
	文獻연구		文 獻 연구관	文 獻 연구관	文 獻 연구관	文 獻 연구사	文 獻 연구사	文 獻 연구원	文 獻 연구원보		

다. 第三案 : 현재의 행정직군속에 잔류하되 上位職級을 부여한다.

계급 직렬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갑	을	갑	을	갑	을	갑	을	갑	을
행 정	행 정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행 정 사무관	행 정 주 사	행 정 주사보	행정서기	행 정 서 기 보	
	사 서		사 서 이사관	사 서 부이사관	사 서 서기관	사서관	사 서	사서보	사서서기	사 서 서 기 보	

가 아님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 問題는 圖書館界의 全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韓國圖書館協會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關心을 기울여 줄 것을 提議한다. 도서관의 발전이 人的資質에 의한 것이라는 너무도 自明한 原則을 알고 있을진대 이 問題를 江 건너 火災로만 여겨 넘길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특히 協會의 存立目的이 會員의 權益擁護에 있다고 한다면, 또한 도서관 발전의 추진주체라고 한다면 어찌 人的 資源에 관한 問題를 이토록 오랜 기간 방치하고 있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깊이 省察할 때라고 본다.

이 機會에 協會 내에 人力開發特別委員會(가칭)를 두어 問題를 항구적으로 개선할 것을 提言한다.

提言 2 : 圖書館教育界에서도 司書의 公務員任用令上

의 限界點 設定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客觀的으로 政府에 대한 建議나 提案을 해 줄 수 있는 가장 適切한 위치에 있는 研究者의 發言은 現場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効果的인 힘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分明한 것은 學術의 發展이 現場의 成長과 遊離되어 있을 경우 圖書館界의 내부적 붕괴는 加速化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圖書館學은 어떤 면에서는 高度의 發展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그것이 곧 現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했다고 생각된다. 論理的 知識이 現實에 參與되려면 行動만이 意味를 낳는다. 실혹 험준하고 교통스럽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安危과 권위를 벗어나 現場을 개선시켜 나가려는 獻身이 없이는 圖書館教育이 아무리 理想的인 方法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結果는 虛像만 남게 될 것이다.